

속초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
----------	----

제출년월일 : 1992. .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 안 사 유

-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 개정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개정으로 음용수 수질 검사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 속초시보건수가조례에는 음용수 수질 검사수수료 징수 규정이 없어 동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 요 골 자

- 음용수 수질 검사 수수료 조항 신설 (안 제 7 조 별표 1 참조)
-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기준 (안 제 9 조 별표 2 참조)

3. 참 고 사 항

- 시정조정위원회 부의결과 _____ 별 첨
- 강원 표준안 _____ 별 첨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속초시보건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및 동조 제1항중 "증명발급수수료" 를 각각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로 한다.

[별표] "제증명 수수료" 를 [별표 1] 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제9조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 를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별표 2] 에 의거 검사수수료" 로 한다.

[별표 2] 검사수수료 감면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	
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통			500		
3. 일반진단서	1통			500		
4. 특별진단서	1통			2,000		
5. 사체검안서	1통			5,000	X-선, 간염검사 포함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1통			2,000		
7.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1통			2,000		
8. 사망 진단서	1통			500		
9. 출생, 사산 또는사태증명서	1통			500		
10.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	1통			300		
11. 1통 초과 발급	1통			100		
12. 음용수에 관한 시험						
가. 음용수 수질검사.					색도, 탁도, 냄새, 맛 PH 상기 이외의 항목 (THM 포함)	
o 정성시험	성분당			1,300		
o 정량시험(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성분당			4,000		
o 일반세균				4,400		
o 대장균군				5,500		
나. 정호수(각급학교, 군부대 소재),						
o 세균학적 검사				4,000		
o 이화학적 검사				2,000		
다. 간이상수도(각급학교, 군부대 소재)/						
o 세균학적 검사				4,000		
o 이화학적 검사				2,000		
라. 간이 상수도원수 검사(각급학교, 군부대 소재)(보사부 음용수 수질기준 32 개 항목)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 운영조례 별표2 수수료액표 제9항 해당 시험항목 수수료액 합산	
o 세균학적 검사				4,000		
o 이화학적 검사				34,000		
마. 기타[상업용 정호수(지하수)및 시지역 소재 정호수 등]					"	
o 세균학적 검사						
o 이화학적 검사						

[별표 2]

검사 수수료 감면 기준

구	분	수수료 (원)	비 고
○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 공해업소에 대한 정기 공해도 검사 ○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 정호수 (각급학교, 군부대 소재) . 세균학적 검사 . 이화학적 검사 ○ 간이상수도정수 (각급학교, 군부대 소재) . 세균학적 검사 . 이화학적 검사 ○ 간이상수도 원수검사 (각급학교, 군부대 소재) . 세균학적 검사 . 이화학적 검사	면 제		
	"		
	"		
	"		
	"		
	"		
		4,000	
		2,000	
		4,000	
		2,000	
		4,000	
		34,000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개
제7조(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에 의거 징수한다.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① --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 -----.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 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때 또는 특별 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 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 - - ----- 특별 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 비 및 [별표 2] 에 의거 검사수수료 -----
[별표] (재증명 발급 수수료) 제1호 ~ 제11호 제12호 (신설)	[별표 1] (재증명 발급 및 검사수수료) 제1호 ~ 제11호 (현행과 같음) 제12호 (신설)
[별표 2] (검사수수료 감면 기준)(신설)	[별표 2] (검사수수료 기준)(신설)